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 참고자료

2025. 8. 29.



행 정 안 전 부

I 지방세기본법

1.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 1
2.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정비 2
3. 지방세 과세정보 관리체계 강화 3
4.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 보정요구 기간 명확화 4
5.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 요청 근거 신설 5
6.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보호 업무·권한 추가 6

II 지방세징수법

1. 최저생활 보호를 위한 압류금지 재산 확대 9

III 지방세법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유상거래 시 적용기준 개선 ... 11
2. 부당행위계산 과세표준 산정방식 보완 12
3. 법인의 지목변경 간주취득 시 과세표준 명확화 13
4. 회원제 골프장 승계취득 과세 합리화 14
5. 법인 등 주택 유상취득 시 종과세 추징 절차 등 보완 15
6. 시가인정액 평가 차이 수정신고 시 가산세 규정 보완 16
7. 인구감소지역 내 임대주택 취득 시 종과 제외 등 17
8.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종과 제외 18

9. CR리츠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시 종과세 제외 연장	19
10. 지방소비세 재정보전분 안분금액 위임 규정 변경	20
11.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 신설	21
12. 비수도권 중소기업 주민세 종업원분 과표 공제 신설	22
13. 국세 특례 종료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23
14. 국외전출자 과세 대상 확대에 따른 용어 변경	24
15.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제도개선	25
16.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환원	26
17.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 신고기한 연장	27
18. 금전매수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변경	28
19.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재산세 납세지 명확화	29
20.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 대상 범위 개선	30
21. 신탁재산의 물적납세의무 범위 확대 및 규정 명확화	31
22. 빈집 철거 후 공용·공공용 사용토지 세부담 추가 완화	32
23. 자동차세 연납 규정 조문 정비	33
24. 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근거 규정 명확화	34

IV 지방세특례제한법

1. 지방세 특례 범위 명확화 등	37
2. 신탁재산 관련 감면 적용 특례 신설	38
3. 지방세 감면 조례 총량 예외 규정 정비	39
4. 농지확대개발 등을 위한 감면 연장	40
5. 임업후계자 등에 대한 감면 연장	41
6. 소형어선 등에 대한 감면 연장	42

7.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감면 연장	43
8.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등 감면 연장	44
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감면 연장	45
10.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	46
11. 법률구조법인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대상 구체화	48
12. 근로복지공단 감면 연장	49
13. 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연장	50
1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대한 감면 연장	51
15. 공공매입임대주택 감면대상자 확대	52
16.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연장 및 확대	53
17.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연장 등	55
18.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	56
19.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확대 및 연장	57
20. 신축에 대한 추정규정 완화	58
21.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 연장	59
22. 스프링클러 설치 숙박시설에 대한 감면 신설	60
23. 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 연장	61
24. 해양오염방제 등에 대한 감면 연장	62
25. 관광단지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	63
26. 부동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사업 정상화 지원을 위한 감면 연장	64
27.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 직접 사용 부동산 감면 연장 및 재설계	65
28.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	66
29.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감면 연장	67

30.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연장	68
31.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연장	69
32. 교환자동차(수소화물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연장	70
33. 한국교통안전공단 부동산 감면 연장	71
34.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	72
35. 도시첨단물류단지에 대한 감면 연장	73
36.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연장 및 재설계	74
37.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연장	75
38.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등	77
39. 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명확화	78
40.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연장 및 확대 등	79
41.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감면 신설	81
42.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	82
43.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	84
44.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연장	85
45. 사권 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정비	87
46.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 연장	88
47.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	89
48.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연장	90
49. 정당에 대한 지방세 면제 연장	91
50. 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확대 등	92
51.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조문 정비	93
52. 인구감소지역 주민 고용 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신설	94
53.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95

54. 종과세율 적용 배제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96
55.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최소납부세제 유예기간 연장	97
56. 도시개발사업 등 감면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기간 연장	98

V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1.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정의 명확화	101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설정	102
3. 과오납금으로 인한 환급 관련 규정 마련	103
4. 징수유예 및 분납 규정 마련	104
5. 체납처분 중지 절차의 객관성 확보	105

지방세기본법

1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안 법§42)

□ 개정개요

※ 국세 반영

현 행	개 정 안
☐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 (대상) 상속인 ☐ (승계 범위) 상속재산 - 상속재산을 전부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인이 수령하는 보험금 포함	☐ 납세의무 승계 범위 확대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①, ②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수령하는 보험금 포함 ① 상속재산을 전부 또는 일부 포기한 경우 ② 지방세 및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보험금은 피상속인 체납 기간의 비율로 안분계산

□ 개정이유

- ①상속재산을 전부 또는 일부 포기한 경우, ②지방세 및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수령하는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도록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

2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정비(안 법§83)

□ 개정개요

※국세 반영

현 행	개 정 안
☐ 세무조사 사전통지 ○ 통지사항 :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 등 ○ 사전통지 기한 : <u>조사 개시 15일 전</u> 까지 납세자에게 통보	☐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 연장 및 재조사 사전통지 기한 별도 규정 ○ (현행과 같음) ○ 사전통지 기한 - <u>세무조사의 경우 : 20일 전</u> - <u>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 결정에 따른 재조사의 경우 : 7일 전</u>

□ 개정이유

-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신속한 재조사를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지방세도 사전통지 기한을 국세 규정과 일치 필요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세무조사를 사전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

3 지방세 과세정보 관리체계 강화(안 법§86, 법§86의2, 영§56의2, 영 §56의3(신설))

□ 개정개요

※국세 반영

현 행	개 정 안
☐ 지방세 과세정보 관리체계 ○ <신 설> ○ <신 설>	☐ 지방세 과세정보 관리체계 강화 ○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에 대해 과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 의무화 * 과세정보 유출·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보호시스템 구축, 과세정보의 파기 등에 대한 주기적 점검 등 ○ 세무공무원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 신설

□ 개정이유

- 과세정보 안정성 확보를 위한 관리 조치 사항 및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세 과세정보 관리체계 강화

□ 적용시기

- 2026. 1. 1. 부터 적용

4 과세전적부심 · 이의신청 보정요구 기간 명확화(안 법§95)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시 보정요구 기간 * 기본법 §88⑧에 따라 본 조항 준용 ○ (사유) 신청의 서식 또는 절차에 결함이 있거나, 불복 사유를 증명할 자료가 미비한 경우 ○ (기간) <u>20일간</u> 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 가능 ※ “20일” 기간 고정	☐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시 보정요구 기간 명확화 ○ (현행과 같음) ○ (기간) <u>20일 간(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0일 이내)</u> 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 가능 ※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1~20일” 중 보정기간 조정 가능

□ 개정이유

- 과세관청이 보정 사유의 중요도에 따라 필요한 기간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하여 세정운영 합리성 제고

□ 적용시기

- 2026. 1. 1. 부터 적용

5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 요청 근거 신설 (안 법§100, 영§66의2(신설))

□ 개정개요

※ 국세 반영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지방세 사건도 <u>조심원장과 상임심판관 전원으로 구성된 회의에서 합동회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의결하는 경우 합동회의에서 심리·결정</u> * 합동회의 대상 - 행안부장관이 당사자인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합동회의를 요청하는 경우 - 지방세행정이나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개정이유

- 지자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세 심판청구 사건에 대해서도 행안부장관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적용시기

- 2026. 1. 1. 부터 적용

6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보호 업무·권한 추가(안 영§51의2)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 ☐ (업무) -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등 - 세무조사·채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 - 납세자권리현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25년 시행) - <신 설> - <신 설> -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 ☐ (권한) -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 요구 -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 교체 및 징계요구 -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 <신 설> ※ '지방세심의위원회' 필요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출석의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가능 -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	☐ 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 추가 ☐ (업무) - (현행과 같음) - <u>마을세무사 운영</u>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u>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과정에서 납세자 지원</u> - (현행과 같음) ☐ (권한) - (현행과 같음) - <u>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 참여 및 의견 제출</u> - (현행과 같음)

□ 개정이유

-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및 권한을 확대하여 납세자 권익보호제도를 활성화하고, 권리구제 과정에서 객관성을 확보하여 납세자 권익 제고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지방세징수법

1 최저생활 보호를 위한 압류금지 재산 확대 (안 법\$40, \$41, 영\$46)

□ 개정개요 ※ 국세 반영

현 행	개정안
☐ 압류금지 재산 ○ 절대적 압류 금지 재산(\$40) - 채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등 14종 - <신 설> ○ 조건부 압류 금지 재산(\$41) - 생업에 유지를 위한 물품 (농·어업에 필요한 기계, 기구 등 3종)	☐ 대상 확대 및 조문체계 통일 ○ 압류 금지 재산의 범위 확대 - (현행과 같음) - 신체 보조 기구, 재해방지 또는 보안 관련 물건 ○ (삭 제) ※ 압류 금지 재산(\$40)으로 통합

- 개정이유
- (조문체계 통일) 절대적 압류금지 재산과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을 통합, 타법*과 일치시켜 납세자 편의 도모하고,
 - * 「국세징수법」 제41조(압류금지 재산), 「민사집행법」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 (대상 신설) 채납자의 최저생활 보호를 위해 신체 보조 기구, 재해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한 물건을 추가하여 압류금지 재산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

지방세법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유상거래 시 적용기준 개선(안 법§7⑪)

□ 개정개요

현 행	개정안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등 취득 시 적용 세율 ○ (원칙) 무상세율 ※ 증여의제 ○ (예외) 유상세율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등 취득 시 적용 세율 ○ (현행과 같음) ○ (예외) 유상세율
【유상세율 적용 사유】 ① 공매, 경매를 통해 취득한 경우 ② 파산선고로 처분되는 부동산 등 취득 ③ 등기,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의 교환 ④ 매매 후 대가 지급 사실 및 소득을 입증	【유상세율 적용 사유】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매매 후 대가 지급 사실 및 소득을 입증 → 지급대가가 현저히 낮은 경우 증여로 간주 * 제도 취지 및 운영현황, 유사 입법례 등을 검토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

□ 개정이유

-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저가 거래 등 조세회피 악용 수단 방지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 부당행위계산 과세표준 산정방식 보완(안 법§10의3②, 영 §18의2)

□ 개정개요

현 행	개정안
☐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 해당 시 과세표준 ☐ (원칙) 시가인정액 ☐ <신 설>	☐ 부당행위계산 해당 시 과세표준 명확화 ☐ (현행과 같음) ☐ (예외) 시가인정액을 알 수 없는 경우 <u>시가표준액</u>

□ 개정이유

-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시 과세표준 적용방식 보완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3 법인의 지목변경 간주취득 시 과세표준 명확화(안 법§10의6②)

□ 개정개요

현 행	개정안
☐ 지목변경 취득 시 과세표준 ☐ (원칙) 사실상 취득가격 ☐ (예외) 시가표준액 - <u>개인에 한하여</u>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적용	☐ 지목변경 취득 과세표준 보완 ☐ (원칙) (현행과 같음) ☐ (예외) 시가표준액 - <u>개인과 법인 모두</u>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적용

□ 개정이유

- 법인이 지목변경에 따라 간주취득 시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과세 보완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4 회원제 골프장 승계취득 과세 합리화(안 법§13⑤)

□ 개정개요

현 행	개정안
☐ 골프장 취득세 중과 대상 ☐ 회원제 골프장 신·증설 후 등록하는 경우* * 원시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 ☐ <신 설>	☐ 골프장 취득세 중과 대상 ☐ (현행과 같음) ☐ 회원제 골프장 승계취득

□ 개정이유

-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과세 형평성 강화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5 법인 등 주택 유상취득 시 중과세 추정 절차 등 보완(안 법§20 등)

□ 개정개요

현 행	개정안
☐ 주택 취득시 중과 제외 대상으로 신고 후 요건 미충족시 추정 절차 ☐ (신고절차) 신고·납부 절차 없음 ☐ (납부세액) 차액(과소납부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정 * 중과세율 적용세액 - 기납부세액 **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취득일부터)	☐ 주택 취득시 중과 제외 대상으로 신고 후 요건 미충족시 추정 절차 ☐ (신고절차) 신고·납부 절차 신설 ☐ (납부세액)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차액을 가산세 없이 신고납부 ※ 과밀억제권역 취득 중과 유예 후 유예 조건 미충족시 신고납부 중

□ 개정이유

- 주택 취득 후 사후적 사유 발생에 따라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의 자발적 신고납부 유도 및 가산세 부담 완화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중과 요건 미충족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6 시가인정액 평가 차이 수정신고 시 가산세 규정 보완(안 법§21③)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납세자가 시가인정액 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 ○ 면제 대상 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 가산세 - <신 설>	☐ 가산세 종류 보완 ○ 면제 대상 가산세 - (삭 제) - (현행과 같음) - 납부지연 가산세

□ 개정이유

- 시가인정액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 정비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7 인구감소지역 내 임대주택 취득 시 종과 제외 등(안 영§28조의2 등)

□ 개정개요

현 행	개정안
☐ 주택 취득세 종과제외 대상 ○ <신 설>	☐ 주택 취득세 종과제외 대상에 민간임대주택 포함 ○ (대상) 인구감소지역 소재 장·단기(10년·6년) 민간임대주택 ○ (적용기간) 1년 한시 종과제외 및 임대기간동안 주택 수 제외

□ 개정이유

-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25.8.14.) 후속조치로서 인구감소지역 소재 민간임대주택(10년·6년) 취득 시 종과세 및 주택 수 제외를 통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1년간(‘26.1.1~12.31) 한시 적용

8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중과 제외(안 영§28조의2 등)

□ 개정개요

현 행	개정안
☐ 지방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 취득 시 주택 수 제외 ☐ 주택 수 제외 - (대상) 비수도권 소재, 85㎡ 이하, 6억원 이하 아파트 - (적용기간) ~ '25.12.31. - (기존 주택 수 제외 기간*) ~ '26.12.31. * 미분양 주택 매입 후 다른 주택 취득 세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주택 수에서 제외(+1년)	☐ 지방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 중과 제외를 통한 세제지원 확대 ☐ 중과 제외로 세부담 완화 확대 - (대상) 현행과 같음 - (적용기간) ~ '26.12.31. - (기존 주택 수 제외 기간*) ~ '27.12.31. * 현행 주택 수 제외 규정과 동일하게 추가 1년을 기존 주택 수에서 제외

□ 개정이유

-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장방안」(25.8.14.) 후속 조치로서 기존 주택 수에 따라 지원 효과가 상이한 '주택 수 제외*' 대신, 취득세 완화 효과가 큰 '중과배제**'로 세제 지원 확대(~'26.12.31.까지 1년 한시 적용)

* <주택수 제외 효과> (기존 2주택자) 8% → 1~3% (기존 3주택 이상자) 12% → 8%

** <중과배제 효과> 주택수 관계없이 1~3%

- 미분양 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 취득시 세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추가로 1년 동안(~'27.12.31.까지) 주택 수에서 제외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1년간('26.1.1~12.31) 한시 적용

9 CR리츠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시 중과세 제외 연장(안 영§28의2 16)

□ 개정개요

현 행	개정안
☐ CR리츠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 매입 시 취득세 중과세 제외* * 법인 주택 취득세율 12% → 1~3% ☐ 대상 요건 (모두 충족) -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 -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 * 사용검사·사용승인 후 미분양만 대상 ☐ 기간 요건 - 취득기간 : '24.3.28. ~ '25.12.31.	☐ CR리츠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 매입 시 취득세 중과세 제외 일몰 연장 ☐ 대상 요건 } (현행과 같음) ☐ 적용 기간 1년 연장 - 취득기간 : '24.3.28. ~ '26.12.31.

□ 개정이유

- 지방 건설경기 및 주택 시장 활성화 지원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10 지방소비세 재정조정분 안분금액 위임 규정 변경(안 법§71)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시군과 교육청에 안분되는 조정 교부금 등의 안분기준 및 안분금액을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법 §71③) ☐ 안분기준과 함께 매년 개정이 필요한 '안분금액'도 시행령으로 규정(영 §75②) ※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2~5에 안분기준 및 안분금액 규정	☐ 시군과 교육청에 안분되는 조정 교부금 등의 안분기준은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하도록 하고, '안분금액'은 법에서 삭제(법 §71③) ☐ 안분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매년 변동되는 '안분금액'은 행안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영 §75②)

□ 개정이유

- 매년 변동되는 지방소비세 재정조정분 안분 금액을 시행령이 아닌 고시로 위임하여 법령 체계의 합리성 제고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

11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주민세 종업원분 과표 공제 신설(안 영§78의2)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종업원 급여총액의 범위 제외 ○ 소득세법의 비과세 대상 급여 ○ 출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급여 등 ○ <신 설>	☐ 주민세 종업원분 과표 공제 신설 ○ 출산 전·후 휴가자,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급여

□ 개정이유

-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고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및 대체인력 채용 활성화에 기여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12 비수도권 중소기업 주민세 종업원분 과표 공제 신설 (안 영§78의2)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종업원 급여총액의 범위 제외 ○ 소득세법의 비과세 대상 급여 ○ 출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 기간 급여 등 ○ <신 설>	☐ 주민세 종업원분 과표 공제 신설 ○ 비수도권(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포함) 소재 중소기업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장기근속수당

□ 개정이유

- 비수도권(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포함) 중소기업에 취업한 직원들의 지역 정착 유도 및 청년층의 수도권 이직 방지 지원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13 국세 특례 종료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안 법§93②)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특례 ○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인용	☐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특례 삭제 ○ 삭제(인용조문 일몰)

□ 개정이유

- 국세 과세특례 종료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삭제하여 지방세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

□ 적용시기

- 2026. 1. 1. 부터 적용

14 국외전출자 과세 대상 확대에 따른 용어 변경(안 법§103의3⑧)

□ 개정 개요

※ 국세 반영

현 행	개 정 안
☐ 국외전출자 양도소득세 세율 ○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국내주식 등'의 용어 사용 * 「소득세법」 제118조의9(국내주식 등)	☐ 국외전출자 양도소득세 세율 용어 변경 ○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확대*에 따라 '주식 등'으로 용어 변경 * 「소득세법」 제118조의9(국외주식 포함)

□ 개정이유

- 국외전출자의 과세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변경하여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

□ 적용시기

- 2027. 1. 1. 이후 출국하는 분부터 적용

15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제도개선(안 법§103의19②)

□ 개정개요

※ 국세 반영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과세표준 차감 대상에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 추가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대상에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 추가 * 「법인세법」 제57조의2

□ 개정이유

- 법인의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합리화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6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환원(안 법§103의20①)

□ 개정개요

※ 국세 반영

현 행		개 정 안	
☐ 법인지방소득세율 및 과표구간 ○ (일반법인)		☐ 법인지방소득세율 상향 조정 ○ (좌 동)	
과세 표준	세율	과세 표준	세율
2억원 이하	0.9%	2억원 이하	1.0%
2억원 ~ 200억원	1.9%	2억원 ~ 200억원	2.0%
200억원 ~ 3,000억원	2.1%	200억원 ~ 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4%	3,000억원 초과	2.5%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 (좌 동)	
* ①~③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① 지배주주 등 지분율 50% 초과 ②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입·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③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과세 표준	세율	과세 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 3,000억원	2.1%	200억원 ~ 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4%	3,000억원 초과	2.5%

□ 개정이유

- 응능부담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17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 신고기한 연장(안 법§103의23①)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의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의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5개월 이내

□ 개정이유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을 연장하여 납세 편의를 제고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18 금전매수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변경(안 법§107②, 영§106)

□ 개정개요

※ 국세 동반개정

현 행	개 정 안
☐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 ○ (원칙) 위탁자 ○ (예외) 수탁자 - (요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한 신탁재산 - (대상) 지역·직장주택조합 ☐ 「지방세법 시행령」 위임 ○ <신 설>	☐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 개선 ○ (현행과 같음) ○ (예외) (현행과 같음) - (요건) (현행과 같음) - (대상) 지역·직장주택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 ☐ 조합의 범위 ○ (대상) 지역·직장주택조합 및 재개발조합 주택정비사업조합 등

□ 개정이유

- 납세자 형평성 제고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19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재산세 납세지 명확화(안 법§108)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선박에 대한 납세지 ○ 선적항 소재지 - 그 밖에 선적항이 없는 선박은 정계장 소재지, - 정계장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 소유자의 주소지 < 참고 > ※ 선박 취득세 납세지 ① 선적항 소재지, 단, 동력수상레저기구는 등록지 ② 그 밖에 선적항이 없는 선박은 정계장 소재지, ③ 정계장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 소유자의 주소지	☐ 동력수상레저기구 납세지 명확화 ○ (현행과 같음) - 단, 동력수상레저기구는 '등록지' - (현행과 같음)

□ 개정이유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납세지를 취득세와 동일하게 “등록지”로 규정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20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 대상 범위 개선(안 법§112)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 규정 ☐ (현행)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시설용지	☐ 비과세 대상 등 정비 ☐ (대상) 국토계획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 중 같은 법 제2조 제13호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기 위한 토지 ☐ (범위)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기 전까지 ※ 또는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되기 전까지

□ 개정이유

- 과세형평성 제고 및 납세자 혼란 방지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21 신탁재산의 물적납세의무 범위 확대 및 규정 명확화 (안 법§119의2①)

□ 개정개요

※ 국세 동반개정

현 행	개 정 안
☐ 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 위탁자가 재산세 등을 체납한 경우 수탁자는 <u>그 신탁재산으로써</u> 납부할 의무 발생	☐ 물적납세의무범위 확대 ☐ 신탁재산의 범위에 수탁자가 「신탁법」 제27조에 따른 사유로 신탁재산에서 얻은 재산을 추가

□ 개정이유

- 수탁자에 대한 물적납세의무 부과 시 신탁재산의 범위에 「신탁법」 제27조에 따른 재산을 포함
 ※ 「신탁법」 제27조(신탁재산의 범위)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22 빈집 철거 후 공용·공공용 사용토지 세 부담 추가 완화(안 영§103의2 §118)

□ 개정개요

※ 「법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25.5.1.)」 후속조치

현 행	개 정 안
☐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 ☐ 빈집 철거 후 <u>3년간</u> 별도합산 적용 ☐ 세 부담 상한 계산 시 철거 전 주택(빈집)에 과세된 세액을 <u>5년간</u> 활용	☐ 공용·공공용 사용토지의 세 부담 완화 기간 확대 ☐ 국가·지자체와 협약하여 <u>1년 이상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 전체</u> 별도합산 적용 ☐ 국가·지자체와 협약하여 <u>1년 이상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 전체</u> 활용

□ 개정이유

- 빈집 관련 재산세 부담 감소를 위해 추가적인 지원 필요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23 자동차세 연납 규정 조문 정비 (안 법§128③)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연세액의 의미가 혼용되어 사용 ☐ 연세액 :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 ☐ 연납공제액 산출 시 연세액 : 납부기한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 ☐ 연납 공제액 산출 방식이 법률과 시행령에 중복하여 규정	☐ 연납 공제액 산출 기준 명확화 ☐ '연세액' 용어와 공제액 산출 계산식을 정비하여 납세자의 이해도 제고 ☐ 공제액 산정 방식을 알기쉽게 정비하여 시행령에 규정

□ 개정이유

-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 공제액 산출방법에 대해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법령체계 정비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4 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근거 규정 명확화 (안 법§147②)

□ 개정개요

현 행	개정안
□ 신탁재산에 대한 수탁자의 물적 납세의무 고지 ○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재산세를 체납하는 경우, - 수탁자에게 재산세 및 소방분 지역 자원시설세 물적납세의무 부여*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동일	□ 신탁재산에 대한 수탁자의 물적 납세의무 근거 규정 명확화 ○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물적납세의무를 부여하도록 재산세 조문을 준용하는 규정 추가

□ 개정이유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동일하며,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또한 재산세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에 따라,
- 신탁재산의 경우에도 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를 부여하는 재산세 규정을 준용토록 관련 근거 명확화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지방세특례제한법

1 지방세 특례 범위 명확화 등(법 §2①5의2, 6., §4①, §75의3, §80의2)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지방세 특례의 범위 ○ 서울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	☐ 인구감소지역 정의 신설 ☐ 범위 명확화 ○ 서울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 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 등

□ 개정이유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의 신설 필요
- 중과세 배제 및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이 과세표준 공제에 포함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이를 개선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2 신탁재산 관련 감면 적용 특례 신설(안 법 §2①8, §185)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신탁재산 감면 적용 특례 신설 ○ 위탁자가 감면 목적에 맞게 사용 시 감면 적용 -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수탁자에 형식적 소유권을 이전하는 담보신탁의 경우 위탁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

□ 개정이유

- 부동산의 실소유자(위탁자)가 부동산을 감면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사실상의 실태가 동일하다면 형식적 소유권이전에 따른 신탁 활용 시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 개선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3 지방세 감면 조례 총량 예외 규정 정비(법 §4⑦)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지방세 감면규모 총량 예외 ○ 행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감면에 대해 지방세 감면규모 총량 적용 대상에서 제외	☐ 규정 정비 ○ (삭 제)

□ 개정이유

- 행안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감면에 대해 지방세 감면규모 총량 적용 대상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일정비율 이내로 조례감면 총량관리

※ 행안부장관과 협의하여 5%이내 총량 별도 추가고시 가능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4 농지확대개발 등을 위한 감면 연장(안 법§8①, ②)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농지확대개발 등 농지 감면 ○ 감면대상 및 감면율 - 농지 확대 개발 및 교환 · 분합용 농지 :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배제 ○ (일몰기한) <u>2025.12.31.</u>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u>2028.12.31.</u>

□ 개정이유

- 농업·임업에 대한 지속 지원을 통해 농림 산업 경쟁력 제고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5 임업후계자 등에 대한 감면 연장(안 법§8③)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임업후계자 등 취득세 감면 ○ (감면대상 및 감면율) -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교환·분합하는 임야 : 100% - 보전산지 임야 : 50% ○ (일몰기한) <u>2025.12.31.</u>	☐ 감면 연장 및 임업 사용 요건 추가 ○ (감면대상) - (현행과 같음) - <u>직접 임업을 하기 위해</u> 취득하는 보전산지 임야 : 50% ○ (일몰기한) <u>2028.12.31.</u>

□ 개정이유

- 농업·임업에 대한 지속 지원을 통해 농림 산업 경쟁력 제고
 - 감면 취지를 고려하여 보전산지에 “임업 직접 사용” 요건 추가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6 소형어선 등에 대한 감면 연장(안 법§9②, ③)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소형어선 등 어업인 지방세 감면 ☐ 감면대상 및 감면율 - 소형어선 : 취득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100% - 어업·양식업권 : 취득세·등록면허세 100% ☐ (일몰기한) <u>2025.12.31.</u>	☐ 감면 연장 ☐ 감면대상 및 감면율 - (현행과 같음) - 어업·양식업권 : 취득세 100% ☐ (일몰기한) <u>2028.12.31.</u>

□ 개정이유

- 어업에 대한 지속 지원을 통해 어업 경쟁력 제고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7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감면 연장(안 법§13②)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감면 ☐ 감면대상 및 감면율 - 농지매매사업 등 농지 ^{1호,5호} : 취득세 50% - 농업생산기반시설 ^{1-2호} : 취득세 50%, 재산세 75% - 경영회생 지원용 농지 등 ^{2호,3호} : 취득세 50%, 재산세 50% - 조성토지 처분특례 ^{1-3호} : : 취득세 50% - 생활환경정비사업·재개발 사업용 토지 등 ^{4호,4-2호} : 취득세 25% ☐ (일몰기한) <u>2025.12.31.</u>	☐ 감면대상 정비 및 감면 연장 ☐ 감면대상 및 감면율 - 농지매매사업 등 농지 : 취득세 25% - 농업생산기반시설 : 취득세 50%, 재산세 75% - 경영회생 지원용 농지 등 : 취득세 50%, 재산세 50% ☐ (일몰기한) <u>2028.12.31.</u>

□ 개정이유

- 농어업 지원을 통한 농어업 경쟁력 확보 및 과세 형평성 제고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8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등 감면 연장(안 법§15①, ②)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감면 ○ 감면대상 및 감면율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등 : 취득세·재산세 50% - 지방농수산물공사 :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유예(부칙) ~25.12.31. ○ (일몰기한) <u>2025.12.31.</u>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최소납부세제 적용 유예 종료 ○ (일몰기한) <u>2028.12.31.</u>

□ 개정이유

- 물가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감면 연장(안 법§18)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 ○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재산세 25% ○ (일몰기한) <u>2025.12.31.</u>	☐ 감면 연장 및 감면대상 명확화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u>2028.12.31.</u>

□ 개정이유

-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 등을 위한 지방세 지속 지원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10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안 법§22)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사회복지법인 등의 사회복지사업용 부동산 등 감면 ○ 사회복지법인·한국한센복지협회 - 취득세·재산세·재산세(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유료) 취득세25% 재산세25% - (무료) 취득세 면제, 재산세50% ○ 사회복지법인등 설립등기 및 면허 - 등록면허세(등록분, 면허분) 면제 ○ 사회복지법인등 사업소 - 주민세(사업소분, 종업원분) 면제 ○ (일몰기한) <u>2025.12.31.</u>	☐ 감면 연장 및 재설계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u>2028.12.31.</u>
☐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추정 ○ 5년 이내 수익사업 사용시 ○ 3년 이내 해당 용도로 미사용 ○ 직접 사용 개시 후 2년 미만 매각중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 ○ (신설)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시설이 폐쇄되는 경우

□ 개정이유

- 노인·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및 지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 또는 시설 폐쇄를 추정사유로 신설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11 법률구조법인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대상 구체화(안 법 §23)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법률구조법인, 한국소비자원 감면 ☐ 고유업무 직접사용 부동산 ☐ (일몰기한) <u>2025.12.31.</u>	☐ 법률구조법인, 한국소비자원에 대한 감면 대상 구체화 ☐ 목적사업* 직접사용 부동산 * 공사·공단의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 ☐ (일몰기한) <u>2028.12.31.</u>

□ 개정이유

- 감면 대상의 범위를 포괄·추상적 고유업무에서 구체화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 등 공익적 역할 지원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12 근로복지공단 감면 연장(안 법 §27①)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감면 ☐ 목적사업용 부동산 - 취득세 25% ☐ (일몰기한) <u>2025.12.31.</u>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u>2028.12.31.</u>

□ 개정이유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및 취약계층 근로자의 복지증진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13 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연장(안 법§28②, ③)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대한 감면 ○ 목적사업용 부동산 - 취득세·재산세 25% ○ (일몰기한) <u>2025.12.31.</u>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u>2028.12.31.</u>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 감면 ○ 목적사업용 부동산 - 취득세 25% ○ (일몰기한) <u>2025.12.31.</u>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u>2028.12.31.</u>

□ 개정이유

- 산업재해 예방 및 기업·근로자의 평생 직업능력 개발 지원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1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대한 감면 연장(안 법§30①)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대한 감면 ○ 목적사업용 부동산(의료 및 연구 사업 외) - 취득세·재산세 25% ○ (일몰기한) <u>2025.12.31.</u>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u>2028.12.31.</u>

□ 개정이유

-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복지서비스 개선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15 공공매입임대주택 감면대상자 확대(안 법§31⑥)

□ 개정개요

현 행	정 부 안
☐ 공공매입임대주택 지방세 감면 ○ (감면대상자) LH, 지방주택공사 ○ (감면대상) 매입하여 임대로 제공하는 주택등(부속토지 포함)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주거용), 기숙사 ○ (감면율) 취득세 25%, 재산세 50% 감면 ○ (일몰기한) 2027.12.31.	☐ 감면대상자 확대 (HUG 추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추가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2027.12.31.

□ 개정이유

- 현재 LH·지방주택공사의 공공매입임대주택 감면 중(취득세 25%, 재산세 50%)
 - 감면대상에 HUG*를 포함하여 LH 등과 과세형평성 제고 및 주로 취약계층이 입주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 * (든든전세주택) 전세금반환보증에 따라 대위변제한 주택을 HUG가 경매로 낙찰 받거나, 협의매수하여 무주택자에게 시세의 90% 수준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16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연장 및 확대(안 법§33의3)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감면 ○ (감면대상자) 사업주체 ○ (감면대상) 지방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 ※ 전용면적 85㎡·취득가액 3억원 이하 - (취득기간) 2024.1.10. ~ 2025.12.31. 신축 취득 - (임대조건) 2025.12.31.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이상 임대 ○ (감면율) 취득세 최대 50% 감면 (법25%+조례25%) <신 설>	☐ 감면 1년 연장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취득기간) 2024.1.10. ~ 2026.12.31. 신축 취득 - (임대조건) 2026.12.31.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이상 임대 ○ (현행과 같음)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개인 구입자 취득세 감면 신설 ○ (감면대상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하는 개인 ○ (감면대상)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 전용면적 85㎡·취득가액 6억원 이하 - (취득조건)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유상거래 취득 조건 ○ (감면율) 취득세 최대 50% 감면 (법25%+조례25%) ○ (일몰기한) 2026. 12. 31.

□ 개정이유

- 지방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 물량 해소 및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지원

□ 적용시기

- ①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사업주체)
- ② 공포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개인구입자)

17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연장 등 (안 법§36의3)

□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생애최초 주택 감면 ○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 감면 : 12억원 이하의 주택 ○ 300만원 한도로 취득세 감면 - 소형주택* * 공동주택(아파트 제외)·도시형 생활주택·다가구주택, 전용면적 60㎡이하·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 최소납부세제 배제 〈신 설〉 ○ (일몰기한) 2025.12.31. ☐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 임차인이 1년 이상 상시거주한 소형주택*을 '24.1.1.부터 '25.12.31.까지 취득한 경우 * 공동주택(아파트 제외)·도시형 생활주택·다가구주택, 전용면적 60㎡이하·2억원(수도권 3억원) 이하	☐ 감면 연장 등 ○ (현행과 같음) ※ 상시 거주 추진 요건 합리화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 최소납부세제 배제 ○ (일몰기한) 2028.12.31. ☐ 소형 임차주택 종료 ○ (종료)

□ 개정이유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세부담 완화 및 주거안정 기여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18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안 법§36의5)

□ **개정개요**

현 행	정 부 안
☐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 (감면대상 주택)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u>출산일부터 5년 이내</u> 취득 주택(주택 수 무관) ☐ (감면내용) 취득세 100% (500만원 限) ☐ (일몰기한) <u>2025.12.31.</u>	☐ 감면대상 확대 및 명확화 등 ☐ <u>1자녀당 1주택 감면 명확화</u> ☐ (좌 동) ☐ (일몰기한) <u>2028.12.31.</u>
☐ 사후관리 규정 ☐ ‘ <u>생애최초 취득 주택 감면(§36의3)</u> ’ 규정 인용 ☐ (추징 요건) <u>자녀와의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 등</u> ☐ (추징배제) <u>기존 거주자의 퇴거 지연 등으로 상시거주 지연</u>	☐ 사후관리규정 합리화 ☐ <u>감면 조문에서 직접 규정</u> ☐ (추징요건 합리화) <u>주택 취득일부터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 등</u> ☐ (추징배제 요건 삭제) ※ 상시거주를 감면요건에서 제외에 따라, 추징배제 요건 불요

□ **개정이유**

- 출산·양육 가정의 주택 구입시 세부담 완화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19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확대 및 연장**(안 법§46)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 중견기업 등 - 취득세·재산세 35% ☐ 대기업(과밀억제권역 外) - 취득세·재산세 35% ☐ 초기 중견기업 - 취득세·재산세 50% ☐ 중소기업 - 취득세 60%·재산세 50% ☐ 추가감면 대상 - 신성장·원천기술 15% 추가 감면 ☐ (일몰기한) <u>2025.12.31.</u>	☐ 감면 확대 및 재설계 ☐ 중소기업 - 수도권 취득세·재산세 45% 비수도권 취득세·재산세 60% ☐ 대기업 - 비수도권 취득세·재산세 35% ☐ 그 밖의 기업 - 수도권 취득세·재산세 30% 비수도권 취득세·재산세 45% ☐ 추가감면 대상 확대 - <u>국가전략기술 15% 추가 감면</u> ☐ (일몰기한) <u>2028.12.31.</u>

□ **개정이유**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비수도권 소재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지원 확대 및 국가전략기술 감면 확대를 통한 국가·기업 경쟁력 제고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20 신축에 대한 추정규정 완화(안 법 §46, §75의5, §90)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감면 적용 후 추정규정		□ 추정규정 완화	
감면	추정 사유	감면	추정 사유
기업부설 연구소	토지, 건축물 취득 후 1년(신·증축 대수선의 경우 2년) 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 인정받지 못한 경우	기업부설 연구소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 건축물 취득 후 1년(신축의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 2년) 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 인정받지 못한 경우
인구감소 지역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인구감소 지역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신축의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 2년) 이내에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마을회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마을회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신축의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 2년) 이내에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 개정이유

- 현재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추정하고 있으나,
 - 신축의 경우 공사소요기간 등으로 인한 해당 토지 직접 사용개시의 지연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2년으로 완화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21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 연장(안 법§47)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한국환경공단의 재활용 환경 복합시설 등 부동산 감면	□ 감면 연장
○ 취득세·재산세 25%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2025.12.31.	○ (일몰기한) 2028.12.31.

□ 개정이유

- 환경개선 및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기관에 대한 지방세 지속 지원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22 스프링클러 설치 숙박시설에 대한 감면 신설(안 법§47의6)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스프링클러 설치 숙박시설에 대한 감면 신설 ○ 법령상 설치의무 대상이 아닌 숙박시설이 스프링클러 설치시 - 취득세 면제 - 재산세 2년간 면제, 3년간 50% 감면 ○ 일몰기한: 2028.12.31.

□ 개정이유

- 비의무대상 숙박시설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 유인을 통한 대형 화재 및 인명피해 예방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23 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 연장(안 법§48)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국립공원공단의 공원관리사업용 부동산 감면 ○ 취득세·재산세 25% ○ (일몰기한) 2025.12.31.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2028.12.31.

□ 개정이유

- 국립공원의 보전, 공원관리사업의 효율적 관리 지원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24 해양오염방제 등에 대한 감면 연장(안 법§49)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해양환경공단의 해양오염 방제업무용 부동산·선박 감면 ○ 취득세·재산세 25% ○ (일몰기한) <u>2025.12.31.</u>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u>2028.12.31.</u>

☐ 개정이유

- 해양환경의 보전 지원 및 어촌 지역 환경 개선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25 관광단지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 (안 법§54)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의 개발용 부동산 ○ 취득세 25%(+조례 25%) ○ (일몰기한) <u>2025.12.31.</u>	☐ 감면 재설계 ○ 지역별 취득세 감면 재설계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감면율</th></tr> </thead> <tbody> <tr> <td>수도권</td><td>취득세 10%(+조례 25%)</td></tr> <tr> <td>비수도권</td><td>취득세 25%(+조례 25%)</td></tr> <tr> <td>인구감소지역</td><td>취득세 40%(+조례 25%)</td></tr> </tbody> </table> ○ (일몰기한) <u>2028.12.31.</u>	구분	감면율	수도권	취득세 10%(+조례 25%)	비수도권	취득세 25%(+조례 25%)	인구감소지역	취득세 40%(+조례 25%)
구분	감면율								
수도권	취득세 10%(+조례 25%)								
비수도권	취득세 25%(+조례 25%)								
인구감소지역	취득세 40%(+조례 25%)								

☐ 개정이유

- 서비스 중심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 등 他 산업과의 연계효과가 큰 관광산업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지속하되,
 - 수도권·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차등 지원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 촉진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다만, 수도권 지역의 경우 이 법 시행 전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종전 감면 규정 적용

26 부동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사업 정상화 지원을 위한 감면 연장(안 법§57의5)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PFV 사업정상화 지원을 위한 취득세 감면 ☐ 취득세 50% ※중과 배제 ☐ (일몰기한) 2025.12.31.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2027.12.31.

□ 개정이유

- 금리상승과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사업 중단 및 수익성이 악화된 부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정상화 지속 지원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27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 직접 사용 부동산 감면 연장 및 재설계(안 법§58④)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 ☐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 부동산 - 취득세 50%, 재산세 35% 감면 ※ 재산세 조례 +15% 가능 ☐ (일몰기한) 2025.12.31.	☐ 감면 대상 재설계 및 감면 연장 ☐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 부동산 - 취득세 <u>수도권 35%, 비수도권 50%</u> 재산세 <u>5년 수도권 20%, 비수도권 35%</u> ※ 재산세 조례 +15% 가능 ※ <u>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은 비수도권 감면을 적용</u> ☐ (일몰기한) 2028.12.31.

□ 개정이유

-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지속 지원으로 지역의 소비진작 및 일자리 창출 등 기여하고,
 -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한 차등 지원으로 지역 균형발전 촉진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28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 (안 법§58의2①·②)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시행자의 직접사용 및 임대·분양 목적 부동산 - 취득세 35%, 재산세 5년간 35% ☐ 최초로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 - 취득세 35%, 재산세 5년간 35% ☐ (일몰기한) <u>2025.12.31.</u>	☐ 감면 재설계 및 감면 연장 ☐ 수도권·비수도권 감면을 차등 적용 - 취득세 <u>수도권 15%, 비수도권 35%</u> <u>재산세 5년간 수도권 15%, 비수도권 35%</u> ※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은 비수도권 감면을 적용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u>2028.12.31.</u>

□ 개정이유

-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지속 지원으로 한정된 용지에 대한 도시 내 산업입지 고도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되,
 -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한 차등 지원으로 지역 균형발전 촉진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다만, 수도권 지역의 경우 이 법 시행 전 설립 승인을 받은 경우는 종전 규정 적용

29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감면 연장(안 법§60①)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협동조합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 감면 ☐ 생산·가공·수주·판매·보관·운송용 - 취득세 50% 감면 (전통시장 상인 등 75%) ☐ (일몰기한) <u>2025.12.31.</u>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u>2028.12.31.</u>

□ 개정이유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촉진을 통한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지방세 지속 지원 필요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30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연장(안 법§60④)

□ 개정개요

현 행	정 부 안
☐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직접 사용 부동산 ○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 - 취득세 50% 감면 - 재산세 50% 감면 ○ (일몰기한) 2025.12.31.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2028.12.31.

□ 개정이유

- 지방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비영리기관으로 지방세 지원을 통해, 기업 경영, 일자리, 창업 지원 등 수행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31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연장(안 법§63)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국가철도공단 부동산 및 철도차량 지방세 감면 ○ 철도시설용 부동산 : 취득세 25% ○ 국가 등 귀속 철도차량 및 부동산 :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 최소납부세제 배제 ○ (일몰기한) 2025.12.31. ☐ 한국철도공사 부동산 및 철도차량 지방세 감면 ○ 사업용 부동산 : 취득세 25%,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50% ○ 일반철도차량 : 취득세 50% ※ 고속철도 : 취득세 25% ○ (일몰기한) 2025.12.31. ☐ 지방도시철도공사 부동산 및 철도차량 감면 ○ 취득세,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등록면허세 100%* *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 ※ 최소납부세제 배제 ○ (일몰기한) 2025.12.31. ☐ (주)SR 철도차량 감면 ○ 고속철도차량 : 취득세 25% ○ (일몰기한) 2025.12.31.	☐ 감면 연장 및 재설계 ○ (현행과 같음) ○ 국가 등 귀속 철도차량 및 부동산 : 취득세·재산세 100%(반대급부 無), 50%(반대급부 有) ※ 최소납부세제 배제 ○ (일몰기한) 2028.12.31. ☐ 감면 연장 및 도시지역분 정비 ○ 사업용 부동산 : 취득세 25%, 재산세 50%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2028.12.31.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2028.12.31.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2028.12.31.

□ 개정이유

- 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32 교환자동차(수소화물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연장 (안 법 §66⑥)

☐ 개정개요

현 행	정 부 안
☐ 고시된 수소전기화물자동차 ○ 취득세 50% 감면 ○ (일몰기한) <u>2025.12.31.</u>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u>2028.12.31.</u>

☐ 개정이유

- 수소전기화물차 보급 확대를 위한 지방세 지원 지속 필요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33 한국교통안전공단 부동산 감면 연장(안 법 §69)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한국교통안전공단 시험연구 및 자동차검사소용 부동산 감면 ○ 취득세 25% ○ (일몰기한) <u>2025.12.31.</u>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u>2028.12.31.</u>

☐ 개정이유

-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통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도모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34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안 법§71①,②)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물류단지 부동산 감면(§71①·②) ☐ 사업시행자 - 취득세 35%, 재산세 25%* * 조례 10% 추가 可 ☐ 입주기업 - 취득세 50%·재산세35%(5년) ☐ (일몰기한) 2025.12.31.	☐ 감면 연장 및 재설계 ☐ 사업시행자 <table border="1"> <thead> <tr> <th>지역</th><th>감면율</th></tr> </thead> <tbody> <tr> <td>수도권</td><td>취 25% 재 15%</td></tr> <tr> <td>비수도권</td><td>취 35% 재 25%</td></tr> <tr> <td>인구감소지역</td><td>취 50% 재 35%</td></tr> </tbody> </table> ☐ 입주기업 <table border="1"> <thead> <tr> <th>지역</th><th>감면율</th></tr> </thead> <tbody> <tr> <td>수도권</td><td>취 35% 재 25%(5년)</td></tr> <tr> <td>비수도권</td><td>취 50% 재 35%(5년)</td></tr> <tr> <td>인구감소지역</td><td>취 75% 재 50%(5년)</td></tr> </tbody> </table> ☐ (일몰기한) 2028.12.31.	지역	감면율	수도권	취 25% 재 15%	비수도권	취 35% 재 25%	인구감소지역	취 50% 재 35%	지역	감면율	수도권	취 35% 재 25%(5년)	비수도권	취 50% 재 35%(5년)	인구감소지역	취 75% 재 50%(5년)
지역	감면율																
수도권	취 25% 재 15%																
비수도권	취 35% 재 25%																
인구감소지역	취 50% 재 35%																
지역	감면율																
수도권	취 35% 재 25%(5년)																
비수도권	취 50% 재 35%(5년)																
인구감소지역	취 75% 재 50%(5년)																

□ 개정이유

- 물류비용 절감 및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 수도권·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차등 지원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 촉진

□ 적용시기

- '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다만, 수도권 지역 사업시행자가 이 법 시행 전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종전 규정 적용하고,
 수도권 지역 입주기업이 이 법 시행 전 취득한 물류시설용 부동산 (5년 내)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종전 규정 적용

35 도시첨단물류단지에 대한 감면 연장(안 법§71의2)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도시첨단물류단지에 대한 감면 ☐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용 토지 및 물류시설 : 취득세 15%(+조례10%) ☐ 도시첨단물류단지 내 물류시설용 부동산 : 취득세 40%(+조례10%) ☐ (일몰기한) 2025.12.31.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2028.12.31.

□ 개정이유

- 물류비용 절감 및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36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연장 및 재설계(안 법§72)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별정우체국에 대한 감면 ○ 목적사업용 부동산 - 취득세 2%p 경감 - <u>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u> <u>주민세(사업소·종업원) 면제</u> ○ (일몰기한) <u>2025.12.31.</u>	☐ 감면 연장 및 재설계 ○ 감면 재설계 등 - <u>취득세 25%</u> - <u>재산세 면제</u> ○ (일몰기한) <u>2028.12.31.</u>

□ 개정이유

- 읍·면 등 낙후된 지역에 대한 보편적 행정서비스 제공 지원
- 국가 공공기관에 대한 감면율과 유사한 수준으로 감면율 재설계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37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연장(안 법§74)

□ 개정개요

현 행	정 부 안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도시개발사업) - 시행자 : 체비지·보류지 취득세 75% 감면 ○ (주거환경개선사업) - 시행자 : 대지조성용 주택 및 체비지·보류지 취득세 75% 감면 - 부동산소유자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취득세 면제 ○ (재개발사업) - 시행자 : 대지조성용 부동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 주택 취득세 50% 감면 - 부동산소유자 : 전용면적 60㎡이하 주택 취득세 75% 감면, 60㎡초과 85㎡이하 주택 취득세 50% 감면 (1가구 1주택 限) ○ (일몰기한) <u>2025.12.31.</u> ※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232호, 2023.3.14.) 부칙 제11조 : 2023.1.1. 이전 환지계획 인가 또는 관리처 분계획 인가를 받은 도시개발·재 개발사업 부동산의 소유자 취득 부동산 종전 규정에 따라 <u>2025.12.31.</u> 까지 감면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u>2028.12.31.</u> ※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232호, 2023.3.14.) 부칙 제11조 : <u>2028.12.31.</u> 까지 감면 연장

□ 개정이유

-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원주민의 재정착 지원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38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등(안 법§75의2)

□ 개정개요

현 행	정 부 안
□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 (감면대상)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입주기업 및 사업시행자 ○ (감면율) 취득세·재산세 5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 적용 ○ (일몰기한) <u>2025.12.31.</u> <u>〈신 설〉</u>	□ 재산세 감면기간 설정 및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취득세 : (현행과 같음) ○ 재산세 :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간 50% 범위에서, 그 다음 3년간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 적용 ○ (일몰기한) <u>2028.12.31.</u> ○ 창업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 준용

□ 개정이유

- 기업도시·낙후지역의 개발 육성을 통한 지방 투자 촉진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39 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명확화(안 법§75의4)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감면 ○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 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 면제 ○ (신설) ○ (일몰기한) <u>2025.12.31.</u>	☐ 감면 연장 및 명확화 ○ (현행과 같음) ○ <u>창업의 의미 명확화</u> -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규정 * 합병·분할, 현물출자, 법인전환 등 ○ (일몰기한) <u>2028.12.31.</u>

□ 개정이유

- 미군기지 주둔에 따른 각종 규제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역균형 발전·지역경제활성화 지원
- 창업 관련 타 조문과의 형평성 및 정합성 제고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40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연장 및 확대 등(안 법§75의5)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 등에 대한 감면 ○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 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 면제 - 재산세 5년 100% + 3년 50% ○ (신설) ○ 사후관리 규정 - 취득일부터 1년 경과시까지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일몰기한 - '25.12.31.까지	☐ 감면 연장 및 명확화 등 ○ (현행과 같음) ○ <u>창업의 의미 명확화</u> -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규정 * 합병·분할, 현물출자, 법인전환 등 ○ <u>사후관리 완화</u> - 취득일부터 1년 경과시(<u>신축시 해당 토지는 2년</u>)까지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 <u>일몰기한 연장</u> - ' <u>28.12.31.까지</u>
☐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 무주택자 또는 1가구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	☐ 감면 확대 및 감면한도 신설 등 ○ (<u>지원지역 확대</u>) <u>비수도권 인구 감소관심지역*</u> 으로 확대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 예정('25.11.28.) ○ (<u>취득원인 확대</u>) <u>신축으로</u> 취득하는 경우 추가

○ 취득세 25% ※ 조례로 25% 추가 가능	○ <u>감면한도 150만원 신설</u> - <u>법률에 따른 감면한도 75만원</u> - <u>조례로 추가감면시 150만원</u> ※ 감면대상 주택 취득가액을 상향하며 한도 신설
□ (신설)	□ <u>인구감소지역 내 사원용 주택 등에 대한 감면</u> ○ <u>사원에게 임대·무상 제공용으로 취득하는 주택·기숙사 감면 신설</u> - <u>취득세 25%</u> ※ 조례로 25% 추가 가능 ○ <u>사후관리 규정</u> - 취득일부터 1년 경과시(<u>신축시 해당 토지는 2년</u>)까지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직접 사용일부터 2년 미만에 매각·증여 또는 타 용도 사용

□ 개정이유

- 생활인구 유입 증가 및 관련 산업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지역경제활성화 도모

□ 적용시기

- '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41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감면 신설(안 법§75의6)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감면 신설 ○ 빈집을 철거한 토지에 대해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50%(5년간) 감면 ○ 빈집 철거 후 해당 토지에 3년 내 신축하는 주택·건축물 취득세 25% 감면(75만원 限) - 조례에 따라 25%, 한도 75만원 추가 가능 ○ (일몰기한) 2028.12.31.

□ 개정이유

- 빈집의 정비·활용을 지원을 위해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철거 후 토지에 신축하는 주택·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42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안 법§78)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산업단지 조성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 감면 재설계 및 감면 연장
○ 사업시행자의 산업단지 조성 - 취득세 35%, - 재산세 35% (비수도권의 경우 60%) 감면 ○ 사업시행자의 산업단지 분양·임대 - 취득세 35%, - 재산세 5년간* 35% (비수도권의 경우 60%) 감면 *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 ○ 사업시행자의 산업단지 직접 사용 - 취득세 35%, - 재산세 5년간 35% (비수도권의 경우 60%) 감면	○ (현행과 같음) - 취득세 15%~50% 감면 (수도권 15%, 비수도권 35%, 인구감소지역 50%) - 재산세 15% ~ 60% 감면 (수도권 15%, 비수도권 50%, 인구감소지역 60%) ○ (현행과 같음) - 취득세 15%~50% 감면 (수도권 15%, 비수도권 35%, 인구감소지역 50%) - 재산세 5년간* 15% ~ 60% 감면 (수도권 15%, 비수도권 50%, 인구감소지역 60%) *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 및 산업용건축물 ○ (현행과 같음) - 취득세 15%~50% 감면 (수도권 15%, 비수도권 35%, 인구감소지역 50%) - 재산세 15% ~ 60% 감면 (수도권 15%, 비수도권 50%, 인구감소지역 60%)

○ 산업단지 입주기업 - 취득세 50%(대수선 25%) ※ 조례 +25%(대수선 +15%) - 재산세 5년간 35% (비수도권의 경우 75%) 감면 ○ (일몰기한) 2025.12.31.	○ (현행과 같음) - 취득세 35%~75%(대수선 25%) (수도권 35%, 비수도권 50%, 인구감소지역 75%) ※ 조례 +25%(대수선 +15%) - 재산세 5년간 35% ~ 75% 감면 (수도권 35%, 비수도권 60%, 인구감소지역 75%) ○ (일몰기한) 2028.12.31.
---	---

□ 개정이유

- 산업단지의 시행자 및 입주기업이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지속 지원하되,
- 수도권·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차등 지원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 촉진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다만,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이 법 시행 전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종전 규정 적용

43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 (안 법 §78의2)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감면 ☐ 공장·지식산업센터 등 설치·운영 분양·임대, 매각 입주기업 근로자 후생복지· 교육 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용 부동산 - 취득세 35%, 재산세 50% ☐ (일몰기한) 2025.12.31.	☐ 감면 재설계 및 감면 연장 ☐ (좌 동) - <u>취득세 25%(비수도권 35%)</u> <u>재산세 25%(비수도권 50%)</u> ※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은 비수도권 감면을 적용 ☐ (일몰기한) 2028.12.31.

□ 개정이유

- 산업단지 개발·관리 및 입주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 창업·벤처 중소기업 유치 및 지원시설 확충 지원 및 지역 균형 발전 도모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44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연장(안 법§81)

□ 개정개요

현 행	정 부 안
☐ 이전공공기관의 부동산 및 법인등기 감면 ☐ (부동산) 취득세 50% 재산세 50% (5년간) ☐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 (일몰기한) 2025.12.31.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2028.12.31.
☐ 이전공공기관 등 이주직원 주택 감면 ☐ (감면대상자) - 이전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9.12.31.이전 소속 공무원 ☐ (감면대상) 이전지역 거주 목적 1가구 1주택 취득세 감면 - 전용면적 85㎡이하 : 면제 - 전용면적 85㎡초과 102㎡이하 : 75% 감면 - 전용면적 102㎡초과 : 62.5% 감면 ☐ (일몰기한) 2025.12.31.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2028.12.31.

□ 개정이유

-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진 및 국가 정책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는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들의 주거 안정 지원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45 사권 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정비 (안 법\$84)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사권 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 ☐ (미집행) 용어 정의는 없으나 <u>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u> 감면 제외하는 것으로 운영 중 ☐ (감면대상)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그 지형도면이 고시된 경우에만 감면	☐ 감면대상 등 정비 ☐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 감면 제외 - 도시정비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경우 감면 제외 ☐ 국토계획법의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공공시설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도 감면대상에 포함 - 도시정비사업은 토지소유자 등의 입안 요청이나 입안 제안을 거쳐 정비구역이 지정된 경우 감면 제외

□ 개정이유

- 과세형평성 제고 및 납세자 혼란 방지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46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 연장 (안 법 §85①)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사업 비영리법인의 갱생보호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취득세 25%, 재산세 25% ☐ (일몰기한) 2025.12.31.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2028.12.31.

□ 개정이유

-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갱생보호사업 지원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47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안 법§85의2)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지방공사 등의 목적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 지방공사 - 취득세·재산세 50% ☐ 지방공단 - 취득세·재산세 면제 ☐ 지방출자·출연기관 - 취득세·재산세 50% ※ (실제 감면율) 감면율 × 지자체 투자비율 ☐ (일몰기한) 2025.12.31.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2028.12.31.
☐ (신설)	☐ 사후관리 규정 신설 ☐ 취득일부터 1년 경과시(신축시 해당 토지는 2년)까지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직접 사용일부터 2년 미만에 매각·증여 또는 타 용도 사용

□ 개정이유

- 교육·문화 진흥 등 주민복리 증진 지원 및 지역개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48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연장(안 법§88)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새마을운동조직·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감면 ☐ 고유업무용 부동산 - 취득세·재산세 면제 ☐ (일몰기한) <u>2025.12.31.</u>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u>2028.12.31.</u>

□ 개정이유

- 지역공동체 나눔·돌봄 활동에 대한 지방세 지속 지원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49 정당에 대한 지방세 면제 연장 (안 법 §89)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정당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취득세,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 등록면허세(면허), 주민세(사업소분, 종업원분) 면제 ☐ (일몰기한) <u>2025.12.31.</u>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u>2028.12.31.</u>

□ 개정이유

- 정당 설립의 자유 보장을 위한 지방세 지속 지원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50 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확대 등(안 법§90)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 주민의 공동소유 부동산 - <u>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지역자원시설세·주민세(사업소·종업원) 면제</u> ○ 주민의 공동소유 선박 - 취득세 면제 ○ (일몰기한) <u>2025.12.31.</u> ○ 사후관리 규정 - 취득일부터 1년 경과시까지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 감면 세목 확대 등 ○ 부동산 감면 - <u>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지역자원시설세 면제</u> ○ 재산세 등 감면 신설 - <u>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지역자원시설세 면제</u> ○ (일몰기한) <u>2028.12.31.</u> ○ 사후관리 규정 완화 - 취득일부터 1년 경과시(<u>신축시 해당 토지는 2년</u>)까지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 개정이유

-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지원을 통한 주민복지 증진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51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조문 정비(안 법 §167의3)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 납부서 발송 인용조문 (「지방세법」 제95조제4항)	☐ 인용조문 변경 반영 ○ 납부서 발송 인용조문 (「지방세법」 제95조제5항) ※제4항 신설에 따라 제5항으로 이동

□ 개정이유

-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 발송 근거법령 개정사항 반영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52 인구감소지역 주민 고용 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신설(안 법§167의5)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지역주민을 고용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 (적용대상) 인구감소지역에 본·지점 등이 소재하는 법인 ☐ (적용요건) 인구감소지역 주민*을 상시근로자로 고용 * 고용시점에 해당 법인 소재 인구감소지역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사람 ☐ (적용내용) 근로자 1인당 45만원(중소기업 70만원)을 고용한 과세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감면(한도 없음) ☐ (사후관리) 3년 이내 폐업·해산 등 사유시 추징 ☐ (일몰기한) 2028.12.31.

□ 개정이유

-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주민 고용 유인 제고 및 주민 정착 지원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

53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안 법 §167의6)

□ 개정개요

※ 국세 동반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자의 경우 분리과세(세율 1.4%~3.5%)을 적용 ☐ (일몰기한) 2028.12.31.

□ 개정이유

-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도입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배당 분부터 적용

54 **중과세율 적용 배제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안 법 §180의2)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중과적용 배제특례 ☐ 리츠, 부동산펀드, PFV의 경우 취득세 대도시 중과 배제 ☐ (신 설)	☐ 추정규정 신설 ☐ (현행과 같음) ☐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특례 대상이 아니게 되는 경우 추정

□ **개정이유**

- 리츠, 부동산펀드, PFV의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 배제하고 있는데, 일정 기간 내 특례 대상이 아니게되는 경우에 대한 추정규정 부재
 - 추정규정 신설을 통해 감면 합리성 제고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55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최소납부세제 유예기간 연장**
(안 법률 제15295호 부칙§7)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도시철도공사의 최소납부세제 적용시기 ☐ (적용시기) 2026. 1. 1.	☐ 적용시기 유예 ☐ (적용시기) 2029. 1. 1.

□ **개정이유**

- 물가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도시개발사업 등 감면 대한 경과조치 적용기간 연장 (안 법률 제19232호 부칙§11)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도시개발사업 등 감면에 대한 경과조치 ☐ '23. 1. 1.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 종전 규정 적용 ☐ (일몰기한) <u>2025. 12. 31.</u>	☐ 경과조치 적용기간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u>2028. 12. 31.</u>

□ 개정이유

-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원주민의 재정착 지원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1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정의 명확화(안 법§2)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가변적 정의 규정 ☐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준용 여부에 따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여부 결정	☐ 정의 규정 명확화 ☐ 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계법을 행정안전부장관 고시로 규정

□ 개정이유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가변적 정의로 징수 현장에서 관리·운영에 어려움 발생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관계법을 행정안전부장관 고시의 별표로 규정

□ 개정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설정(안 법§3)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법의 적용범위 규정 ○ 관계법에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채납된 경우 이 법을 적용	☐ 법의 적용범위 확대·재설정 ○ 관계법상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적용

□ 개정이유

- 부과·징수과정에서의 납부자 권리 보장 지원 및 개별 근거법령과 동법 간 경합 문제 해소를 위해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설정 필요

□ 개정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3 과오납금으로 인한 환급 관련 규정 신설(안 법§7의7, 영§5의16~19)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환급 관련 규정 신설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환급금 발생 시 직권 지급제도 운영 근거 신설

□ 개정이유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환급 절차에 대한 통일된 규정이 없어 환급 누락 등 국민의 재산 손실 및 행정 비효율 발생
 - 환급 관련 규정 신설을 통해 국민 재산 보호 및 환급 절차 운영 효율화

□ 개정시기

- 2026. 1. 1. 이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

4 징수유예 및 분납 규정 신설(안 법§7의9, 영§5의12~14)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유예 등 ☐ 천재지변, 사업에 현저한 손실 등의 사유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부 연기 또는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개정이유

- 징수유예·분할납부 규정 신설을 통해, 납부의무자 부담 완화 및 납부 편의 제공을 제공함으로써 납부자 권리 보장 및 징수율 제고

□ 개정시기

- 2026. 1. 1. 이후 징수유예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5 체납처분 중지 절차의 객관성 확보(안 법§16)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체납처분의 중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의 추산가액이 우선 채권에 충당하고 남은 여지가 없을 경우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함	☐ 체납처분 중지 심의 절차 마련 ☐ 체납처분 중지 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여 체납처분 중지 절차의 객관성을 확보함

□ 개정이유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처분 중지 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절차의 객관성·정당성 확보

□ 개정시기

- 2026. 1. 1. 이후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부터 적용